



**의안번호**

**제125호**

## **2018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b>제 출 자</b>	<b>논 산 시 장</b>
<b>제출연월일</b>	<b>2018. 11. 19.</b>

# 2018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125호
----------	-------

제출연월일 : 2018. 11. 19.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일반회계]

-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 취득
  - 은진면 시묘리 산8-2외 1필지 7,736㎡(토지)
-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건물 증축 취득
  - 취암동 516-8 552.72㎡(건물)

## 3. 공유재산 관리계획

### 가. 총괄(일반회계)

## ○ 2018년도 수시분 3차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m<sup>2</sup>, 천원)

구 분			당초(A)			변경(A+C)			증감(C)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득	계	토지	1	7,736	126,000						
		건물 기타	1	552.72	1,350,000						
	1.매입	토지	1	7,736	126,000						
		건물 기타	1	552.72	1,350,000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기타										

### 가-1. 일반회계

## ○ 2018년도 수시분 3차 관리계획 총괄표



## 나.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가감정 가 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량				
		사업별개요참조					

## 다.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가감정 가 격	처분 시기	처분사유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량				
		해 당 없 음					

## 라. 사업별 개요

### ○ 일반회계

#### 1)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 취득

##### 취득개요

- 사업기간 : 2018. 10. ~ 2018. 12.
- 취득위치 :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산8-2외 1필지
- 취득면적 : 7,736m<sup>2</sup>
- 사 업 비 : 126,000천원 (시비 100%)
- 주요기능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 취득재산 대상내역

(단위 : m<sup>2</sup>, 천원)

연번	위 치	지번	면적	사 업 비				취득시기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7,736				126,000	
1	은진면 시묘리	산8-2	5,833				50,000	2018년도
2	은진면 시묘리	산8-4	1,903				76,000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계획되어 있는 소각로 증설 및 순환형매립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현재의 부지가 협소하여 공사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이의 해결을 위하여 수용 가능한 주변 토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 2018년 10월 : 감정평가 및 예정가격 결정
- 2018년 12월 : 환경자원화센터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매입

□ 위치도



## 2)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건물 취득

### □ 취득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19년
- 취득위치 : 논산시 취암동 516-8번지
- 취득면적 : 552.72m<sup>2</sup>(4층 증축)
  - ※ 시립노인전문병원 : 총 연면적 3,361.68m<sup>2</sup> (기존 2,808.96m<sup>2</sup> + 증축 552.72m<sup>2</sup>)
- 사 업 비 : 1,350,000천원<국비1,080,000천원/시비270,000천원>
  - ※ 보조사업자 :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원장 이재효)
- 주요기능 : 치매 친화적, 안전적, 치료적 환경의 치매전문병동을 구축하여 중증치매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및 집중관리 서비스 등 제공
- 취득재산 대상내역 : 건물

(단위:m<sup>2</sup>/천원)

재 산 표 시			사업규모	추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지목	소재지	면적(m <sup>2</sup> )				
대	논산시 취암동 516-8	552.72	지상4층 증축	1,350,000	2019년도	치매전문병동 구축

##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가적으로 치매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여 중증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치매안심병원 확충 추진 (전국 34개소 → 79개소)
- 치매 친화적, 안전적, 치료적 환경의 치매전문병동을 구축하여 중증치매환자 집중관리 및 치매안심센터와 더불어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3.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17. 10월
  - 2017년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확정내시 통보
  -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계획서 제출(증축, 리모델링, 장비)
  -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선정 결과 및 사업비 변경내역 통보
- 2017. 11월 : 기능보강사업 수정계획서 제출(리모델링, 장비)
  - ※ 증축(504㎡)에 따른 주차장 부지 미확보
- 2018. 02월 : 기능보강사업 수정 계획 승인(보건복지부)
- 2018. 03월 :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 교부결정액 : 636,810천원(시설비 532,400천원, 장비비 104,410천원)
- 2018. 07월
  - 주차장 부지 확보 [취암동 103-74, 임야, 120㎡, 도시재생과→보건위생과로 재산관리관 변경]
  -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서 제출(→보건복지부)
- 2018. 08월 : 기능보강사업계획 변경 승인(보건복지부)
- 2018. 08월
  - 기능보강사업 변경 교부결정 및 통지
    - ※ 교부결정액 : 1,553,750천원(시설비 1,350,000천원, 장비비 203,750천원)
- 2018. 12월 : 치매안심요양병원 증축공사 착공
- 2019. 06월 : 치매안심요양병원 증축 완료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위치도(GIS)



# 관 련 법 규

##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